

기간제근로자(사무보조원) 채용 공고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(휴직 대체)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
2020년 9월 2일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	인원	근무지역	직무내용
기간제근로자 (사무보조원)	2명	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(세종특별자치시)	○ 위원회 사무보조 및 각종 행정업무 지원 등 (부속실 업무 포함)

2. 채용자격 요건

□ 자격요건[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]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(정년)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(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)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
< 국가공무원법 제74조 >

-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.

< 국가공무원법 제33조 >

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□ 우대요건[원서접수 마감일 기준, 서류전형에만 반영]

○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족 세대주

< 저소득층의 범위(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) >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

○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(아래 자격증만 인정)

-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, 워드프로세서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(기사, 산업기사, 기능사)

* '12.1.1.부터 워드프로세서 2급,3급 자격증이 폐지됨에 따라, '11.12.31.까지 취득한 자격증은 1급이상으로, '12.1.1. 이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등급 구분없이 인정

3. 근무조건

□ 신분 :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*

* 기존 공무직근로자 휴직 기간 동안의 대체 근로자 채용으로 계약기간 후, 휴직자가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 후 계약기간 연장 가능

□ 근로계약기간 : 근로시작일('20.10월~11월) ~ 2021. 9. 12.

※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1개월간 수습근무 예정

□ 보수 : 예산 범위 내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*에 따름

* '20년 기준 보수월액: 기본급 약 1,777천원(세전), 시간외수당 등 별도지급

□ 근무시간 : 주5일, 1일 8시간(09:00 ~ 18:00)

□ 휴게시간 : 12:00 ~ 13:00(1시간)

□ 근무지 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층,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

□ 후생복지 : 4대 보험(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) 가입

□ 기타사항 : 「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관리 규정」(국토교통부훈령 제 1305호, '20. 7. 9.)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함

4. 시험방법

□ 1차 심사 : 서류전형

-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요건 및 서류 구비 여부 등 공고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적격일 경우 합격

- 단, 응시인원이 **선발예정 인원 3배수**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적인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**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**

* 서류전형 기준: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, 서류구비 여부 등

** 동점자로 인하여 3배수를 초과할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

□ 2차 심사 :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채용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5개 평가요소마다 “상·중·하”로 평정

* (평가요소) ①국가기관 근무자로서의 정신자세,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③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, ④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⑤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-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해당자에 대하여 **면접시험 합격자결정**

* (불합격기준)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‘하’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‘하’로 평정

□ 최종합격자 결정

- 면접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조회,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, 제출자료 확인 등을 거쳐 최종결정

5. 채용일정

공고기간	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면접시험	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최종합격자 발표
'20.9.2(수) ~9.14(월)	'20.9.4(금) ~9.14(월)	'20.9.22(화) 예정	'20.9.25(금) 예정	'20.9.28(월) 예정	'20.10.14(수) 예정

※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,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합격자, 최종면접 합격자는 별도로 유선 통지하며,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홈페이지 (www.mtc.go.kr)에 게시

- 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하며, 코로나19 확산 등 여건 변화 시에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 가능
- ※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, 결격사유, 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6. 응시원서 접수

□ 접수기간 : 9. 4 (금) ~ 9. 14 (월) 18:00

*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, 이메일은 9. 14(월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

□ 접수방법 : 등기우편 송부 또는 이메일 제출

-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“응시원서 재중” 글자 표기
-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, 택배 및 퀵서비스, 팩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
- 이메일 접수 시 “제목 : 응시원서(성명 ○○○)” 으로 제출
 - 체크리스트, 응시원서 등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**반드시 자필 서명** 하고 증명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통합하여 **1개의 파일로 스캔 (PDF파일)**하여 이메일 첨부(**자필 서명 없을 시 무효처리**)
- * 원서가 접수된 경우, 접수일로부터 3일 내 SMS(문자메세지)로 응시번호 통지
- **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,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

□ 접수 주소

- 우편접수 : (우)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, بانک빌딩 7층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획총괄과 채용담당자 앞
- * **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**
- 이메일 접수 : molitmtc@korea.kr

7. 제출서류

가. 제출서류 목록 1부

나. 응시원서

다. 자기소개서 1부

라. 직무수행계획서 1부

마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
(별지 5호, 반드시 자필기재 서명할 것)

바. 주민등록초본 1부(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제출)

사.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
아. 우대요건 대상자: 저소득층 증명서 1부

자. 우대요건 대상자: 자격증 사본 1부

※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 심사의 근거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 서류 미비시 불합격 처리함

7. 유의사항

-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
-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,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* 채용과 관련하여 외부청탁 등으로 실명이 거론된 자는 불합격 처리됨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,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의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 절차가 완료된 후,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시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-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-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※ 단,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

-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획총괄과 (☎ 044-201-5151 /502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